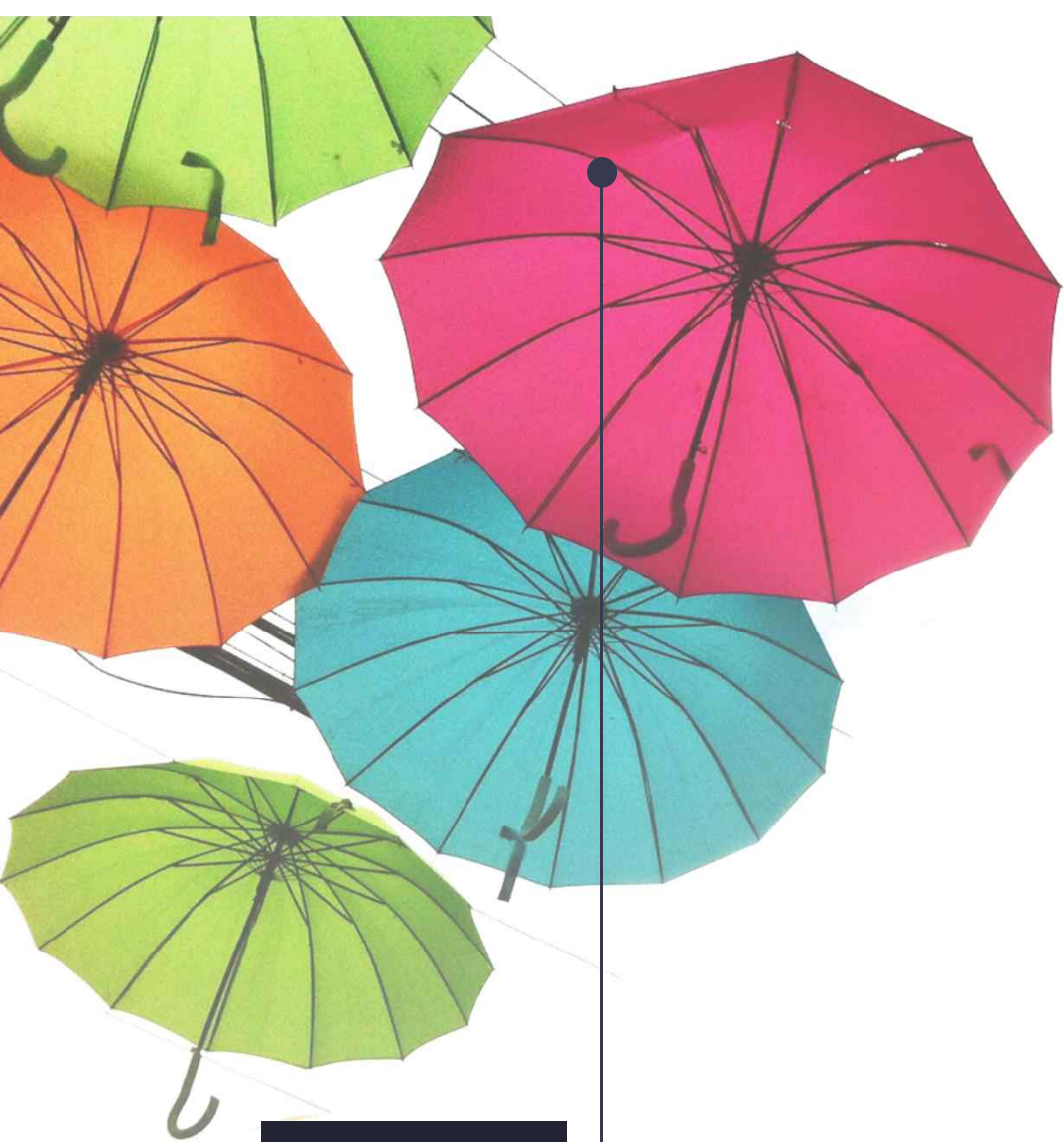




2019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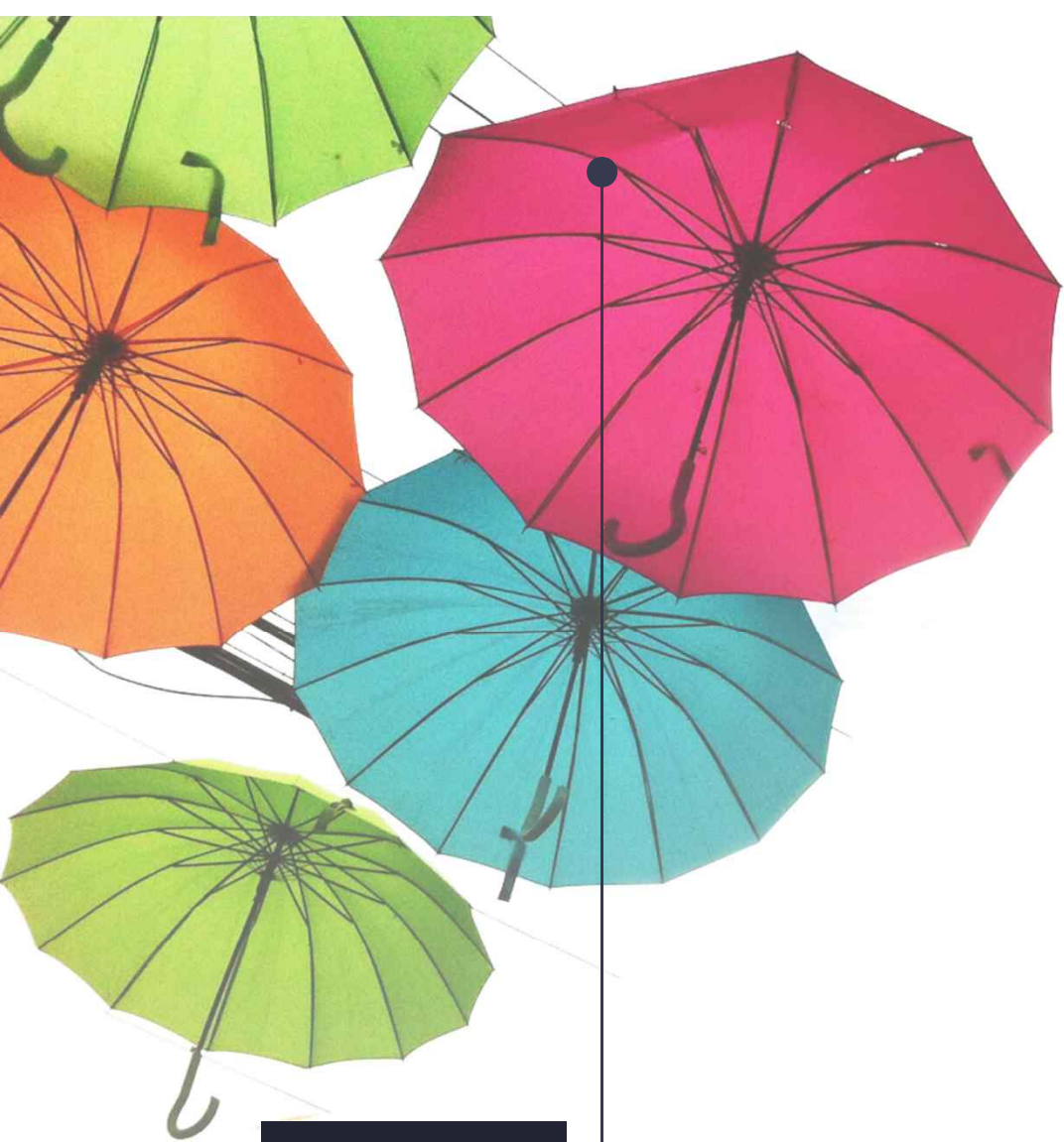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

목 차

- I. 인권영향평가 개요
 - 1. 인권영향평가의 개념
 - 2. 인권영향평가의 목적
 - 3.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

- II. 인권영향평가 결과
 - 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 - 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
 - 3. 인권리스크 점검 및 권고
 - 4. 결론



I

인권영향평가 개요

1. 인권영향평가 개념

인권영향평가란

“인권영향평가”란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원의 활동 또는 사업관계의 결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·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, 연구원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**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**와 연구원이 추진하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**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**로 구분할 수 있다.
(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항)

인권영향평가 실시 근거

(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규정 제33조)

-
- 제33조(인권영향평가의 실시)** ① 위원회는 연구원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·잠재적 인권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2. 인권영향평가의 목적

● 인권영향평가의 유형 및 목적

- ❖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: 연구원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·잠재적 인권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.
- ❖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: 연구원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● 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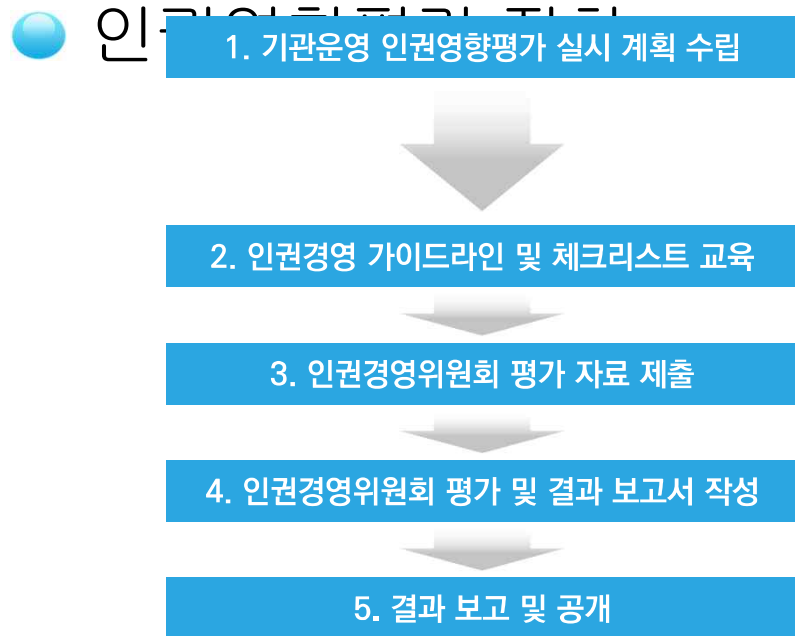
- ❖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인권리스크를 관리하고, 인권경영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함.
- ❖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리스크를 점검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은 강화시키고, 부정적인 영향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함

3.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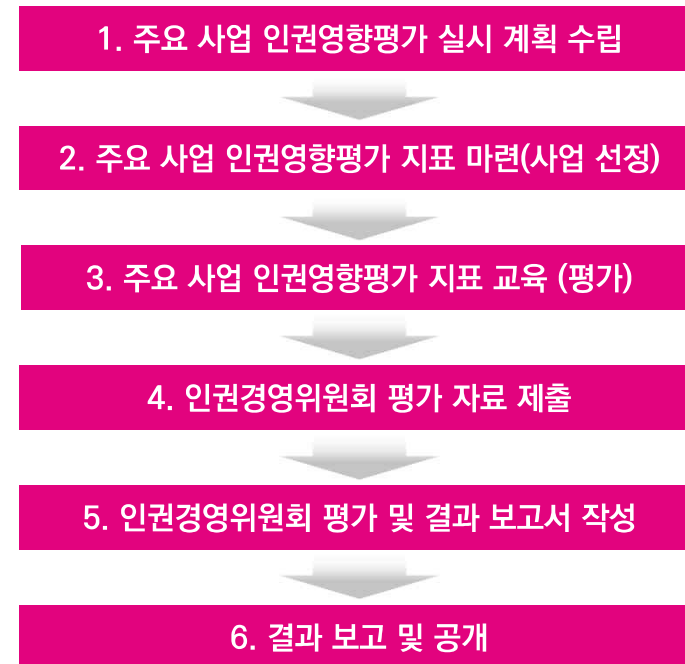
● 인권영향평가 대상

- ❖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: 연구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
- ❖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: 주요 사업 1개 <회의실 및 휴게공간 개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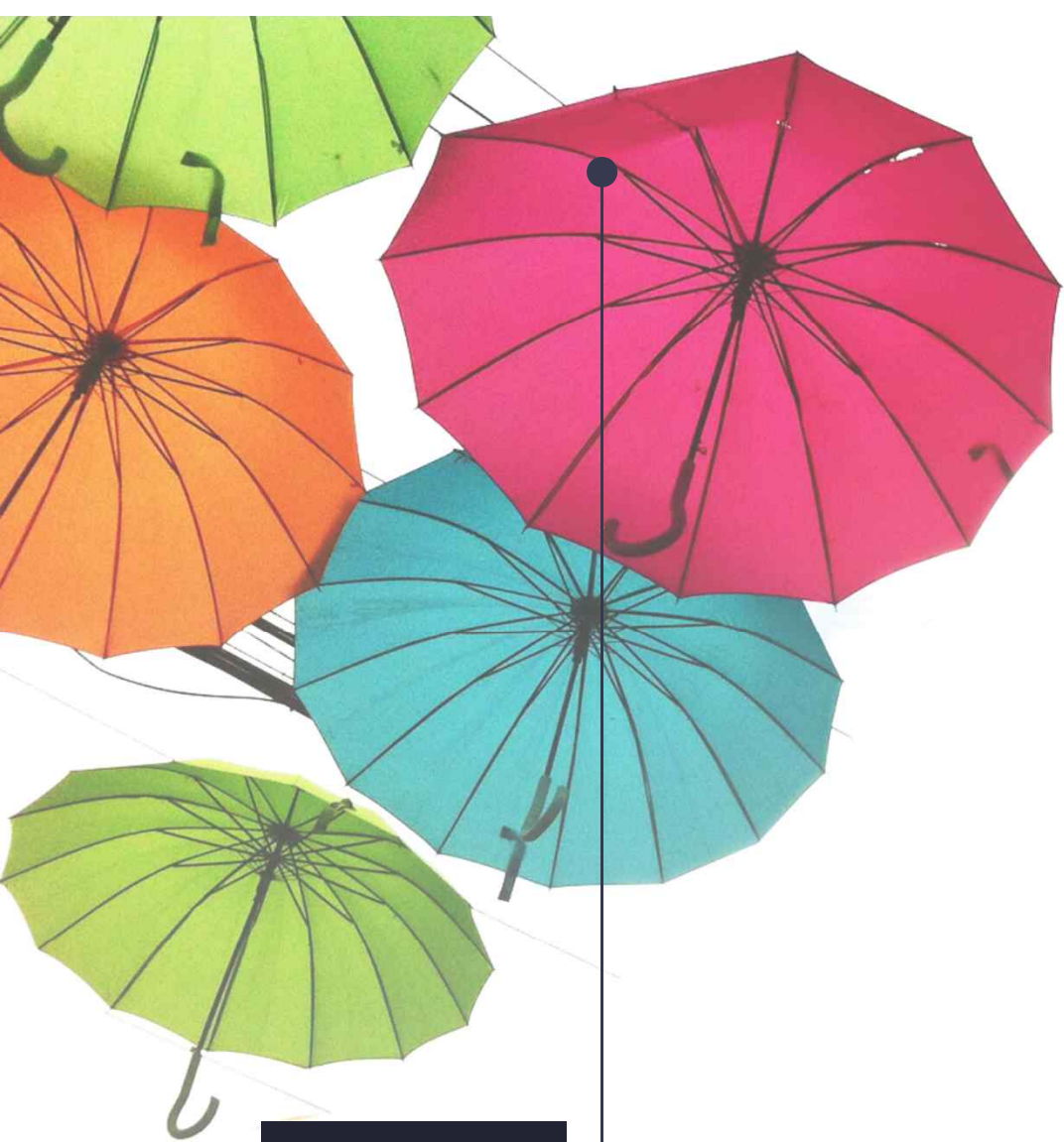
●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

●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



자료: 국가인권위원회. (2018).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, p.15, p.18



II

2019 인권영향평가 결과

1. 인권영향평가 결과

●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 결과

❖ 총 8개 항목 중 인권경영체제 구축, 고용상의 비차별,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, 강제노동의 금지 등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음. 그러나 산업안전 보장,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, 환경권 보장 등 항목에서는 보완 필요

- **인권경영체제의 구축:** 인권경영규정 제정 및 인권경영헌장 제정·선포 등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.
- **고용상의 비차별:**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,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
- **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:**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,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.
- **강제노동의 금지:** 강제노동 이용사실이 없음
- **산업안전 보장:**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의 근무환경을 관리하고 있음. 그러나, 장애인들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.
- **책임있는 공급망 관리:** 연구원과 직·간접적으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.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**환경권 보장:**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,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. 전 직원 대상 환경관련 교육 등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
- **소비자 인권보호:**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등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연구원이 수집·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. 고객의 알권리 보장과 인권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임.

1. 인권영향평가 결과

● 주요 사업 인권영향 평가

- ❖ 체크리스트 총 4개 항목 중 인권존중기반 구축, 인권영향 및 정보관리, 사업주체로서의 의무 이행 항목의 평균은 8점 중 각각 5.6점, 7.2점, 7.0점임.
- ❖ 갑질 및 불공정진단 항목은 총 4점 중 보완 필요가 2.2점으로 나타남.
 - **인권존중기반 구축:** 사업 선정은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선정되었고, 공개적이며,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음. 향후 주요 사업 관련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,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인권영향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.
 - **인권영향 및 정보관리:** 연구원은 사업수행 시 발행가능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, 인권문제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음. 사업 수행 시 인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며,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
 - **사업주체로서 의무이행:** 사업 추진 시 인권문제 대응방안 매뉴얼이 갖추고 있음.
 - **갑질 및 불공정진단:** 입찰·계약방식의 공정성, 특약조건을 적정성, 계약금액 산정의 공정성 검토 필요. 또 기존 계약내용의 추가 변경에 대한 정당성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갑질 및 불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

2. 인권리스크 점검 및 권고

●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

- ❖ 장애인들이 연구원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
- ❖ 협력회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조치를 강화 노력
- ❖ 전 직원 대상 환경 교육 검토 등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

●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

- ❖ 주요사업 관련자 인권교육 실시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인권영향을 고려
- ❖ 사업 수행 시 인권관련 정보의 적절한 수집 및 관리, 정기적 재검토
- ❖ 회의실 및 휴게공간 이용 시 불편 사항 의견 수렴 및 해소 노력

3. 결론

-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 및 사업 수행에서 인권을 고려하는 시발점임.
-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인권리스크를 점검하고,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·정성적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노력 필요
- 전 직원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교육 필요